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10.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 263호로 2020년 10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부조리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존 신고대상에 상근인력 및 민간위탁기관 등 추가 (안 제2조)
- 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신고기한 변경 (안 제4조)
- 다. 보상금 환수절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2020. 9. 8. ~ 9. 28.):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제도 운영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호에서 적용 대상을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상근인력,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한 수탁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하는 등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 안 제4조는 부조리 신고 기한을 일반부조리는 3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는 5년으로 설정하였음.

- 안 제10조는 현 조례에서 보상금 환수를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것이 법령의 위임 없는 의무 부과와 강제처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신고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환수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기한 및 신고보상금 환수 절차 등 현 규정상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부조리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공직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환수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환수 사유
 2. 부정이익
 3. 이자
 4. 환수금액(부정이익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납부기한
 6. 납부기관
 7. 납부방법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한 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